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10호
----------	--------

제출년월일 2022. 8. .
제출자 체육과장

1. 제안이유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대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조항과 공공체육 시설 확충에 따른 체육시설 종목 사용료를 신설하고 경기도 조례 개선 권고 사항인 사용료 반환규정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김포FC 프로경기 관람권 수입 사용료 징수 면제(안 제10조)
- 나. 김포FC 및 김포FC 산하 유소년 축구단의 훈련·경기 사용료 감면 항목 신설(안 제11조)
-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대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조항 신설(안 제11조)
- 라. 사용료 반환 규정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신설(안 제12조)
- 마. 김포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별표 2] 단체 및 노인·어린이 요금 삭제
- 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2. 6. 8. ~ 6. 28. (2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있음 (붙임)

2) 부서협의결과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나) 경 기 도 : 체육과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을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물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3호에 의해 전용사용하거나 제4호에 의해”를 “제4호에 의해 전용사용하거나 제5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이상”을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김포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항”을 “「김포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로 인하여”를 “경우”로 한다.

제7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인이나 단체가 영리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9조제3항제1호 중 “시 :”를 “시:”로, “100분의 20”을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 :”를 “시:”로, “100분의 50”을 “50퍼센트”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공식경기 :”를 “공식경기:”로, “100분의 5”를 “5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행사 :”를 “행사:”로, “100분의 10”을 “1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프로경기 :”를 “프로경기:”로, “100분의 15”를 “15퍼센트(단, 김포FC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0분의 20”을 “20퍼센트”로, “100분의 25)을”을 “25퍼센트)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김포FC 및 김포FC 산하 유소년 축구단의 훈련·경기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80” 을 “80퍼센트” 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한하고,” 를 “한하고, 별표 1과 별표 2의” 로, “50%” 를 “50퍼센트”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50” 을 “50퍼센트” 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를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100분의 10 감면 :” 을 “10퍼센트 감면:” 으로 한다.

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파. 「국군포로의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을 “시장은” 으로, “따라” 를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관람료 포함)를 해당 구분에 따라”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용사용 등을 허가받고 다음 각 목의 사용개시 기간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 를 “사용 5일 전: 받은”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90퍼센트

다. 사용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③ 그 밖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3조제2항 중 “의해” 를 “따라” 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사용자의” 를 “사용자”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 를 “한다” 로 한다.

제15조 중 “사람은” 을 “자는” 으로 한다.

제18조 중 “예산을 확보” 를 “예산 확보에 노력” 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지원” 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체육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명	체육과장 문상호
	팀장 직위·성명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원선아(☎2586)

[별표 1]

전 용 사 용 료

(단위 : 원)

시 설 별		사용구분		체 육 경 기		체육이외 행사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총 합 운 동 장	육상장(트랙)	주 간	4시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야 간	〃	60,000	90,000	300,000	400,000
	축구장	주 간	1시간	40,000	45,000	75,000	100,000
		야 간	〃	45,000	50,000	100,000	125,000
	풋살장	주 간	1시간	5,000	10,000	-	-
		야 간	〃	10,000	15,000	-	-
일반축구장 (인조잔디)		주 간	1시간	30,000	35,000	75,000	100,000
		야 간	〃	35,000	40,000	100,000	125,000
다목적체육관		주 간	4시간	40,000	60,000	80,000	120,000
		야 간	〃	60,000	90,000	120,000	180,000
테니스장 (면당)		주 간	2시간	10,000	20,000	20,000	30,000
		야 간	〃	20,000	30,000	30,000	40,000
족구장·풋살장		주 간	1시간	5,000	10,000	50,000	80,000
		야 간	1시간	10,000	15,000	80,000	120,000
탁구장(대당)		주 간	1시간	10,000	15,000	15,000	20,000
		야 간	1시간	15,000	20,000	20,000	30,000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경기장 사용료는 육상장, 축구장, 풋살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기준시간을 초과사용 시,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환산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 김포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김포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어야 함. ○ 상기의 전용사용료는 부속시설 사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부속시설 사용 시 별도 사용료(별표 5)를 납부하여야 한다(테니스장의 조명사용료는 제외한다).
-----	--

[별표 2]

연 습 사 용 료

(단위 : 원)

시설별	월회원(자유이용)		일일회원(1회)				비 고
			일 반		단 체		
	어 른	군인, 청소년	어 른	군인, 청소년	어 른	군인, 청소년	
다목적체육관	40,000	30,000	2,000	1,500	-	-	
수 영 장	50,000	40,000	5,000	3,000	-	-	
테니스장 (면 당)	40,000	30,000	2,000	1,500	-	-	
사계절썰매장	-	-	7,000	5,000	5,600	4,000	
체력단련장	40,000	30,000	-	-	-	-	
에어로빅장	40,000	30,000	-	-	-	-	
탁 구 장	40,000	30,000	2,000	1,500	-	-	
파크골프장	45,000		3,000	-	-	-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1회 2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 테니스장의 야간사용료는 일일회원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 월회원은 1개월 이용을 기준으로 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함. ○ 수영장 연습사용료(월회원)는 여성사용자(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에게 10퍼센트를 할인함. ○ 사계절썰매장의 사용료는 야외수영장 사용을 포함하며, 평일 50명 이상일 경우 30퍼센트, 200명 이상일 경우 40퍼센트를 감면하고 청소년수련원 이용단체는 40퍼센트를 할인함. ○ 김포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김포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어야 함. ○ 월회원제로 운영되는 체력단련장 및 에어로빅장의 1회 사용(체험)료는 월회원료의 10퍼센트로 한다. ○ 노인·어린이는 어른요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기타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3. “시설의 사용”이란 <u>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이용하거나 방송·광고게시·공연·전람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u></p> <p>4. · 5. (생략)</p> <p>6. “사용자”란 <u>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제3호에 의해 전용사용하거나 제4호에 의해 연습사용 하는 사람을 말한다.</u></p> <p>7. ~ 11. (생략)</p> <p>12. “어른”이란 만 19세 <u>이상</u>의 사람을 말한다.</p> <p>13. (생략)</p> <p>14. “장애인”이란 「<u>장애인복지법</u>」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u>자</u>를 말한다.</p> <p>15. “다자녀가정”이란 「<u>김포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u>」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p> <p>제4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유로</u> 인하여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물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u> ----- -----.</p> <p>4. · 5. (현행과 같음)</p> <p>6. ----- ----- <u>제4호에 의해 전용사용하거나 제5호에 따라</u> ----- -----.</p> <p>7. ~ 11. (현행과 같음)</p> <p>12. ----- <u>이상 만 65세 미만</u>-----.</p> <p>13. (현행과 같음)</p> <p>14. ----- 「<u>장애인복지법</u>」 제32조----- ---- <u>사람을</u> -----.</p> <p>15. ----- 「<u>김포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u>」 제2조제2호----- -----.</p> <p>제4조(개방제한) ----- ----- <u>경우</u> --- ----- -----.</p>

현행	개정안
<p>1. ~ 4. (생략)</p> <p>제7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신설></p> <p>3. (생략)</p> <p>제9조(사용료) ①·② (생략)</p> <p>③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p> <p>1. 전용사용 시 : 초과시간 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u>100분의 20</u> 가산</p> <p>2. 연습사용 시 : 초과시간 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u>100분의 50</u> 가산</p> <p>④ (생략)</p> <p>제10조(관람권)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1. 김포시체육회 및 김포시장애인체</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7조(사용허가 제한)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개인이나 단체가 영리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9조(사용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시: ----- ----- 20퍼센트 -----</p> <p>2. ----- 시: ----- ----- 50퍼센트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관람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p>

현 행	개 정 안
<p>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단위 이상 <u>공식경기</u> : 관람권 수입총액의 <u>100분의 5</u></p> <p>2. 제1호 이외의 <u>행사</u> : 관람권 수입총액의 <u>100분의 10</u></p> <p>3. <u>프로경기</u> : 관람권 수입총액의 <u>100분의 15</u></p> <p>③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를 예치하게 하거나 예매하는 경우에는 관람권 금액의 <u>100분의 20</u>(체육이외의 행사 및 프로경기는 <u>100분의 25</u>)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제11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별표 5 및 별표 7의 부속시설 사용료는 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p> <p>1. 전액감면 가. ~ 다. (생략)</p> <p><신설></p> <p>2. <u>100분의 80</u> 감면 가. ~ 라. (생략)</p>	<p>----- ----- ----- <u>공식경기</u>: ----- ----- <u>5퍼센트</u></p> <p>2. ----- <u>행사</u>: ----- ----- <u>10퍼센트</u></p> <p>3. <u>프로경기</u>: ----- <u>15</u> <u>퍼센트</u>(단, 김포FC는 제외한다)</p> <p>③ ----- ----- ----- <u>20</u> <u>퍼센트</u>----- ----- <u>25퍼센트</u>를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사용료 감면) ① ----- ----- ----- ----- ----- ----- ----- ----- ----- -----</p> <p>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김포FC 및 김포FC 산하 유소년 축구단의 훈련·경기</u></p> <p>2. <u>80퍼센트</u> ----- 가. ~ 라.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에 되어 있는 노인(단, 1인당 1프로그램에 <u>한하고</u>, 수영장 이용료는 <u>50%</u>를 감면한다.)</p> <p>바. (생 략)</p> <p>3. <u>100분의 50</u> 감면</p> <p>가. ~ 라. 삭 제</p> <p>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u>) 및 장애인을 위한 행사</p> <p>바. (생 략)</p> <p>사.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학교 또는 「<u>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u>」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활동</p> <p>아. ~ 카.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4. <u>100분의 10</u> 감면 : 그린카드를 사</p>	<p>마. ----- ----- ----- <u>한하고, 별표 1과 별표 2의</u> ----- <u>50퍼센트</u>-----</p> <p>바. (현행과 같음)</p> <p>3. <u>50퍼센트</u> ----</p> <p>마. ----- ----(<u>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u> ----- -----</p> <p>바. (현행과 같음)</p> <p>사. ----- <u>「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u>----- -----</p> <p>아. ~ 카. (현행과 같음)</p> <p>타. 「<u>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파. 「<u>국군포로의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p> <p>4. <u>10퍼센트</u> 감면: -----</p>

현 행	개 정 안
<p>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소지자에 한함)</p> <p>②·③ (생략)</p> <p>제12조(사용료 반환) ① <u>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한다.</u></p> <p>1. <u>전용사용, 상업사용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경우</u></p> <p>가. <u>사용개시 10일 전까지 : 사용료 전액</u></p> <p>나. <u>사용개시 7일 전까지 : 사용료의 100분의 90</u></p> <p>다. <u>사용개시 3일 전까지 : 사용료의 100분의 80</u></p> <p>라. <u>사용개시 1일 전까지 : 사용료의 100분의 70</u></p> <p>2. ~ 4. (생략)</p> <p>② <u>연습사용권 및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u></p> <p><신설></p> <p>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생략)</p>	<p>-----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사용료 반환) ① <u>시장은 -----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관람료 포함)를 해당 구분에 따라 ---.</u></p> <p>1. <u>전용사용 등을 허가받고 다음 각 목의 사용개시 기간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경우</u></p> <p>가. <u>사용 5일 전: 받은 -----</u></p> <p>나. <u>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90퍼센트</u></p> <p>다. <u>사용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u></p> <p><삭제></p> <p>2. ~ 4. (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③ <u>그 밖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u></p> <p>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에 <u>의해</u>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30일간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사용허가를 금지하며,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한다.</p>	<p>② ----- <u>따라</u> ----- ----- ----- ----- -----.</p>
<p>제14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 등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u>사용자의 부담</u>으로 한다.</p>	<p>제14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 ----- -----. ----- ----- <u>사용자</u>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u>한다</u>.)</p>	<p>③ ----- ----- ----- ----- ----- ----- ----- <u>한다</u> -----</p>
<p>제15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용·연습사용허가 또는 시민회관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u>사람은</u>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p>	<p>제15조(양도의 금지) ----- ----- ----- ----- ----- <u>자는</u> ----- ----- -----.</p>
<p>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u>예산을 확보</u>하여야 하며,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p>	<p>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 ----- ----- ----- <u>예산 확보에 노력</u> ----- -----</p>

현 행

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20조(위탁관리) ① (생략)
 ② 삭제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

전 용 사 용 료

(단위 : 원)

시 설 별	사용구분		체 육 경 기		체 육 이 의 행 사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종합운동장	육상장(트랙)	주간 4시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야간 〃	60,000	90,000	300,000	400,000
	축구장	주간 1시간	40,000	45,000	75,000	100,000
		야간 〃	45,000	50,000	100,000	125,000
	풋살장	주간 1시간	5,000	10,000	-	-
		야간 〃	10,000	15,000	-	-
일반축구장(인조잔디)	주간 1시간	30,000	35,000	75,000	100,000	
	야간 〃	35,000	40,000	100,000	125,000	
다목적체육관	주간 4시간	40,000	60,000	80,000	120,000	
	야간 〃	60,000	90,000	120,000	180,000	
테니스장(면당)	주간 2시간	10,000	20,000	-	-	
	야간 〃	20,000	30,000	-	-	

비 고

- 주경기장 사용료는 육상장, 축구장, 풋살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기준시간을 초과사용 시,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환산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 김포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한다.
- ※ 김포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어야 함.
- 상기의 전용사용료는 부속시설 사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부속시설 사용 시 별도 사용료(별표 5)를 납부하여야 한다(테니스장의 조명사용료는 제외한다).

개 정 안

 --.

제20조(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③ -----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별표 1]

전 용 사 용 료

(단위 : 원)

시 설 별	사용구분		체 육 경 기		체 육 이 의 행 사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종합운동장	육상장(트랙)	주간 4시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야간 〃	60,000	90,000	300,000	400,000
	축구장	주간 1시간	40,000	45,000	75,000	100,000
		야간 〃	45,000	50,000	100,000	125,000
	풋살장	주간 1시간	5,000	10,000	-	-
		야간 〃	10,000	15,000	-	-
일반축구장(인조잔디)	주간 1시간	30,000	35,000	75,000	100,000	
	야간 〃	35,000	40,000	100,000	125,000	
다목적체육관	주간 4시간	40,000	60,000	80,000	120,000	
	야간 〃	60,000	90,000	120,000	180,000	
테니스장(면당)	주간 2시간	10,000	20,000	20,000	30,000	
	야간 〃	20,000	30,000	30,000	40,000	
축구장·풋살장	주간 1시간	5,000	10,000	50,000	80,000	
	야간 1시간	10,000	15,000	80,000	120,000	
탁구장(대당)	주간 1시간	10,000	15,000	15,000	20,000	
	야간 1시간	15,000	20,000	20,000	30,000	

비 고

- 주경기장 사용료는 육상장, 축구장, 풋살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기준시간을 초과사용 시,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환산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 김포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 김포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어야 함.
- 상기의 전용사용료는 부속시설 사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부속시설 사용 시 별도 사용료(별표 5)를 납부하여야 한다(테니스장의 조명사용료는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연 습 사 용 료

(단위 : 원)

시설별	월회원(자유이용)			일일회원(1회)						비 고
				일 반			단 체			
	어 른	군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어 른	군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어 른	군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다목적체육관	40,000	30,000	20,000	2,000	1,500	1,000	1,000	800	500	
수영장	50,000	40,000	30,000	5,000	3,000	2,000	4,000	2,400	1,600	
테니스장 (면 당)	40,000	30,000	20,000	2,000	1,500	1,000	1,000	800	500	
사계절별매장	-	-	-	7,000	5,000	4,000	5,600	4,000	3,200	
체력단련장	40,000	30,000	30,000	-	-	-	-	-	-	
에어로빅장	40,000	30,000	30,000	-	-	-	-	-	-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1회 2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 단체는 20인 이상을 말함. ○ 테니스장의 야간사용료는 일일회원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 월회원은 1개월 이용을 기준으로 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함. ○ 수영장 연습사용료(월회원)는 여성사용자(만 13 이상 만 55세 이하)에게 100분의 10을 할인함. ○ 사계절별매장의 사용료는 야외수영장 사용을 포함하며, 평일 50인 이상일 경우 100분의 30, 200인 이상일 경우 100분의 40을 감면하고 청소년수련원 이용단체는 100분의 40을 할인함. ○ 김포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를 가산한다. * 김포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어야 함. ○ 월회원제로 운영되는 체력단련장 및 에어로빅장의 1회 사용(체협)료는 월회원료의 10%로 한다. ○ 기타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별표 2]

연 습 사 용 료

(단위 : 원)

시설별	월회원(자유이용)			일일회원(1회)						비 고
				일 반			단 체			
	어 른	군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어 른	군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어 른	군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다목적체육관	40,000	30,000		2,000	1,500					
수영장	50,000	40,000		5,000	3,000					
테니스장 (면 당)	40,000	30,000		2,000	1,500					
사계절별매장	-	-		7,000	5,000		5,600	4,000		
체력단련장	40,000	30,000		-	-		-	-		
에어로빅장	40,000	30,000		-	-		-	-		
탁 구 장	40,000	30,000		2,000	1,500		-	-		
파크골프장	45,000			3,000	-		-	-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1회 2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 테니스장의 야간사용료는 일일회원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 월회원은 1개월 이용을 기준으로 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함. ○ 수영장 연습사용료(월회원)는 여성사용자(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에게 10퍼센트를 할인함. ○ 사계절별매장의 사용료는 야외수영장 사용을 포함하며, 평일 50명 이상일 경우 30퍼센트, 200명 이상일 경우 40퍼센트를 감면하고 청소년수련원 이용단체는 40퍼센트를 할인함. ○ 김포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김포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어야 함. ○ 월회원제로 운영되는 체력단련장 및 에어로빅장의 1회 사용(체협)료는 월회원료의 10퍼센트로 한다. ○ 노인·어린이는 어른요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기타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25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삭제 <2021. 7. 27.>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2021. 7. 2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밖청소년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74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의사상자법)

[시행 2019. 3. 12.] [법률 제15897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8. 4.] [중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1. 8.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의사상자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2. 2. 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국군포로송환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타법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5. 3. 27.>
1.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1의2. “국군포로 유해”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귀환포로”라 함은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억류기간”이라 함은 국군포로가 된 날부터 억류지를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날까지를 말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를 말한다.
 6. “신상정보”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연령·출신지역 등에 의하여 특정한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임을 알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국군포로나 그 가족임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김포시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시행 2021. 1. 4.]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770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18.11.7>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시행 2020. 3. 25.]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687호, 2020. 3.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이란 김포시(이하 ” 시 “라 한다)에서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 부속시설 “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민회관”이란 전시실, 다목적홀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3.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이용하거나 방송·광고게시·공연·전람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4.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5. “연습사용”이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18.12.31>
6. “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제3호에 의해 전용사용하거나 제4호에 의해 연습사용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7.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 2018.12.31>
8.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사용하거나 입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제7호에서 이동 2018.12.31>
9. “어린이”이란 초등학생을 포함한 만 3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8호에서 이동 2018.12.31>
10. “청소년”이란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9호에서 이동 2018.12.31>
11.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직업군인 제외) 및 전환복무자(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전투경찰대원)를 말한다. <제10호에서 이동 2018.12.31>, <개정 2020.3.25.>
12. “어른”이란 만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11호에서 이동 2018.12.31>
13.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12호에서 이동 2018.12.31>
1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신

설 2018.12.31>

15. “다자녀가정”이란 「김포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제3조(시설의 개방)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김포 시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 중 종합운동장은 일요일에 한하여 09:00 ~ 18:00까지 전면무료 개방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다.(단, 체육경기는 불가함) <신설 2018.12.31.>

제4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②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전용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체육시설을 연습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6조(전용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8.12.3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 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신설 2018.12.31>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제4호에서 이동 2018.12.31>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 <제5호에서 이동 2018.12.31>
7.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등 행사 <제6호에서 이동 2018.12.31>

② 시장은 시민회관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신설 2018.12.3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문화예술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3.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 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제7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시설물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신설 2018.12.31>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호에서 이동 2018.12.31.>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행사의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사용료) ①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부터 별표 7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사용료는 연습사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1. 전용사용 시 : 초과시간 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2. 연습사용 시 : 초과시간 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④ 시설의 초과사용료와 부속시설 사용료는 행사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달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9조의2(강습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② 제1항의 경우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수강료등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10조(관람권) 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권(초청장, 초대권 매출액은 관람권 수입액으로 본다)

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람권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김포시체육회 및 김포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단위 이상 공식경기 :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5

2. 제1호 이외의 행사 :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0

3. 프로경기 :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5

③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를 예치하게 하거나 예매하는 경우에는 관람권 금액의 100분의 20(체육회외의 행사 및 프로경기는 100분의 25)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별표 5 및 별표 7의 부속시설 사용료는 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 <단서 신설 2018.12.31., 2020.3.25.>

1. 전액감면(개정 2015.6.10)

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0.3.25.>

나. <개정2016.10.31, 삭제 2018.12.31>

다.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및 태권도 시범단의 훈련

2. 100분의 80 감면

가. 체육회 또는 장애인 체육회(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개정 2020.3.25.>

나.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다.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개정 2020.3.25.>

라. 학교의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에 되어 있는 노인(단, 1인당 1프로그램에 한하고, 수영장 이용료는 50%를 감면한다.) <신설 2018.12.31>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마목에서 이동 2018.12.31>

3. 100분의 50 감면

가. 삭제 <2020.3.25.>

나. 삭제 <2020.3.25.>

다. 삭제 <2020.3.25.>

라. 삭제 <2020.3.25.>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및 장애인을 위한 행사 <개정 2019.7.26>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수급자를 위한 행사
사.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학교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활동 <개정 2018.12.31., 2020.3.25.>

아. 어린이(개정 2015.6.10)

자. 다자녀 가정의 직계존비속 세대 구성원 <신설 2018.12.31., 2020.3.25.>

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신설 2020.3.25.>

카.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가족을 위한 행사 및 활동 <신설 2020.3.25.>

4. 100분의 10 감면 :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소지자에 한함)

②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면액이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로 감면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2016.10.31.>

제12조(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 사용료 전액

나. 사용개시 7일 전까지 : 사용료의 100분의 90

다. 사용개시 3일 전까지 : 사용료의 100분의 80

라. 사용개시 1일 전까지 : 사용료의 100분의 70

2.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8.12.31>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중계방송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와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② 연습사용권 및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개정 2020.3.25.>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8.12.31>

4.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신설 2020.3.25.>

② 제1항에 의해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30일간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사용허가를 금지하며,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한다. <개정 2018.12.31., 2020.3.25.>

제14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 등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 등의 설치 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0.3.25.>

제15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용·연습사용허가 또는 시민회관의 전용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2019.7.26., 2020.3.25.>

제16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변경 등을 함으로써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② 삭제 <2020.3.25.>

제17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9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은 당해 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2.31>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포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삭제 <2020.3.25.>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 삭제 <2020.3.25.>

제20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대장·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25.]

제21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0.3.25.>

1. 수탁자가 조레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개정 2018.12.31>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8.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내용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0.3.25.>

제22조(체육관련 단체의 지원) 시장은 체육단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건물 중 일부를 체육회 또는 가맹경기단체의 사무실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사용시간)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구 분	주간	야간
체육시설	하절기 (3월~10월)	06:00~18:00 18:00~22:00
	동절기 (11월~다음해2월)	06:00~17:00 17:00~22:00
시민회관	전시설 다목적홀	09:00~18:00 18:00~22:00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체육시설을 위·수탁 계약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

1. 김포시종합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
2. 김포시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3. 김포시 통진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부칙(개정 2015.6.10 조례 제1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31. 조례 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2.31.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26. 조례 제1612호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7.26. 조례 제1619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687호, 202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단서조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부과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